

SW산업성장기반, 제도개선으로 탄탄하게

- 지식경제부(장관 : 이윤호)는 19일(금),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개정안, SW사업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기준 제정안, SW기술자 신고요령 제정안, SW사업자 신고요령 개정안을 마련·고시함
 - 이번에 제·개정되는 고시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
 - ① 「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」을 개정하여 매출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현행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, 매출 8천억원 미만 대기업은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참여가능한 공공SW 사업규모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범위를 확대함('09.4.1일 시행)
 - ② 「SW사업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기준」을 제정하여 하도급 계약시 표준계약서 제출, 전문기관(한국 SW진흥원)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예방, 대·중소기업간 상생을 유도함
 - ③ 「SW기술자 신고요령」을 제정하여 SW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, SW기술자 신고관리기관은 「한국 SW산업협회」로 지정하였으며, 최근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'09.7월까지의 최초 등록 수수료 징수를 면제함
 - ④ 「SW사업자 신고요령」을 개정하여 신고사항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매년 재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신고업무 부담을 줄임
 - 금번 제·개정되는 고시는 중소SW기업 발전, 공정환경 조성 등 향후 SW산업의 성장기반 구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
 - 우선, 대기업 참여 하한액 상향 조정은 단순히 공공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시장을 창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
 - 대기업이 협소한 국내시장 대신 해외시장 진출을 유도하여 국내 SW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임
 - 또한, 하도급 적정성 판단기준은 발주자에게 공정계약을 위한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내실있는 사업추진은 물론 상생의 시장환경 조성을 통해 향후 전문기업의 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 - 장기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통한 사업수행보다는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한 입찰참여가 증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
 - 특히 SW사업 대기업 참여 하한액 상향조정, 하도급 판단기준 등은 '07년부터 시행한 SW분리발주와 상호 보완되어 중소SW기업의 성장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됨
- 지식경제부는 금번 고시 제·개정안이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비하여 SW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며향후에도 SW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임